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서 동 학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7월 2일

3. 제안이유

“지역건설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 변경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8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안 제3조, 안 제6조의2, 안 제8조, 안 제15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지역건설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합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건설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항, 제4조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제8조의2(중전의 제8조의1)의 제목 “의1(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으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규정함.

제3조제2항 중 “증대하는데”를 “높이는데”로,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같은 조 제2호 중 “적용해야”를 “적용하여야”로, 제8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정비 사항을 반영함.

제13조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정비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 때”를 “소집하려는 경우”로,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비사항을 반영함.

제16조 중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조문을 정비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예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